

[별첨1. 스킨앤스킨 임시주주총회, 의안자료]

1. 일시 :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 9:00
2. 장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둔유2로 14-1, 대회의실
3.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서세환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중임)의 건

제1-2호 의안, 이기호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중임)의 건

제1-3호 의안, 신민철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중임)의 건

제1-4호 의안, 오원용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제1-5호 의안, 신용열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제1-6호 의안, 정진욱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제1-7호 의안, 최영수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제1-8호 의안, 강승범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이사 후보자 내역]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서세환	1970.03.04	-	-	이사회
이기호	1956.06.01	-	-	이사회
신민철	1972.07.07	-	-	이사회
오원용	1971.05.04	-	-	이사회
신용열	1974.12.04	-	-	이사회

정진욱	1972.08.26	○	-	이사회
최영수	1970.05.15	○	-	이사회
강승범	1970.07.06	○	-	이사회
총 (8) 명				

※ 위 이사 선임 후보자 중 '서세환, 이기호, 신민철'은 신규선임이 아닌 재선임(중임) 안건이며, 이사 후보자 전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	약력
서세환	(주)스킨앤스킨 대표이사	전) 대명개발기획 경영지원부 현) 라미화장품제조(주) 대표이사
이기호	(주)스킨앤스킨 사내이사	현) 코디웍스 대표이사
신민철	(주)스킨앤스킨 사내이사	전) (주)POSCO LED 인증 팀장 현) (주)케이엘에프 대표이사
오원용	보니코리아 대표이사	전)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신용열	(주)보니코리아 부사장 (주)라리카 대표이사	전) 새한그룹 전) 주식회사 인터드림이사 전) 주식회사 프록투스 상무
정진욱	-	전) 캐논코리아 회계팀 전) 현대글로벌비스 회계팀 전) 더피프티원 상무
최영수	삼성출판사 마이리틀타이 거본부 영업관리부	전) 대교 출판사업본부 본부장 전) GS 홈쇼핑 금융서비스팀
강승범	-	전) 벽산건설 부장 전) 대구산업단지관리공사 부장

제2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가. 의안의 요지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개정의 목적
<p>제1조 (목적)</p> <p>이 규정은 정관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2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p> <p>이 규정은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조문 정리
<p>제2조 (적용범위)</p> <p>임원 퇴직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창업일부터 임원 혹은 고문으로 본 규정 제정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임원에 한정한다. 단, 본 규정 제정 이후에 승진 혹은 영입으로 임원이 된 경우는 지급율을 1.5로 정한다.</p>	<p>제2조 (적용범위)</p> <p>① 이 규정은 등기이사 및 감사, 비등기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p> <p>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p>	조문 정리
<p>제4조 (퇴직금 지급기준)</p> <p>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p> <p>재임연수 X 퇴임전 3개월간 급여액의 평균액 X 별표에 정한 지급비율</p>	<p>제4조 (퇴직금 지급기준)</p> <p>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p> <p>퇴직금 = 퇴임전 3개월간 급여액의 월평균임금 * 근무일수 / 365* 별표에 정한 지급비율</p> <p>②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에 지급된 급여 총액을 3등분한 것과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을 합하여 12등분한 것을</p>	조문 정리

변경 전	변경 후	개정 목적
	<p>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p>	
<p>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p> <p>재임기간은 창업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년수의 계산상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 계산한다. 단, 승진 혹은 영입으로 인하여 임원이 된 경우는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계산한다.</p> <p>(별표, 임원 직위별 퇴직금 지급비율 적용 참조)</p>	<p>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p> <p>재임기간은 임용일부터 퇴임일까지로 한다.</p>	<p>조문 정리</p>
<p>제7조 (특별 공로금 지급)</p> <p>임원이 퇴직할 경우 (제6조의 퇴직사유를 포함) 이사회는 퇴직 임원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 공로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p>	<p>제7조 (특별 공로금 지급)</p> <p>회사 업무상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나 순직자 및 공상병으로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p> <p>① 퇴직위로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p> <p>② 퇴직위로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금액은 퇴직자의 회사에 대한 공로, 공상병의 경중에 따라 결정하며, 이하의 사유를 이유로 지급할 수 있다.</p> <p>i. 재직기간 동안 회사에 대한 기여</p> <p>ii. 소속 사업부문의 조직변동(합병,</p>	<p>회사 임직원 동기부여 등</p>

변경 전	변경 후	개정 목적								
	매각 , 분사, 폐지, 구조조정 등) iii.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신설	제8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임원이 개인적 사유에 의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임원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부터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설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시 향후 퇴직금 지급규모 축소를 통한 회사 재무구조 개선목적 등								
제1조 (시행일) 이 사규는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에 따른 시행일 변경								
(별표) 임원 직위별 퇴직금 지급비율 <table border="1" data-bbox="201 1189 584 1594"> <tr> <td data-bbox="201 1189 584 1290">직 위</td> </tr> <tr> <td data-bbox="201 1290 584 1391">대표이사</td> </tr> <tr> <td data-bbox="201 1391 584 1491">부사장, 전무이사</td> </tr> <tr> <td data-bbox="201 1491 584 1594">상무이사, 이사</td> </tr> </table>	직 위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별표) 임원 직위별 퇴직금 지급비율 <table border="1" data-bbox="600 1189 1058 1594"> <tr> <td data-bbox="600 1189 1058 1290">직 위</td> </tr> <tr> <td data-bbox="600 1290 1058 1391">대표이사(회장,사장,의장 포함)</td> </tr> <tr> <td data-bbox="600 1391 1058 1491">부사장, 전무이사</td> </tr> <tr> <td data-bbox="600 1491 1058 1594">상무이사, 이사</td> </tr> </table>	직 위	대표이사(회장,사장,의장 포함)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회사내 직급,직위 변경내용 포함 및 현실화
직 위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직 위										
대표이사(회장,사장,의장 포함)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